



보험회사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

이승준 연구위원

요약

-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공동행위를 유발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안 통과 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가 예상됨.
-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을 법으로 강제하는 한편 양 기관 업무협약(MoU) 활성화를 촉진하여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낮추고 보험시장 경쟁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.

■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 포함)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¹⁾이 지난 8월 13일 발의되었음.

● 본고는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배경,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개정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함.

■ 보험시장에서는 그 동안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제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원적²⁾ 규제의 상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.

● 2002년 4월에 마무리된 보험료 자유화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자율 및 보험료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여전히 하고 있

1) 김종훈 의원(대표발의) 외 11인, 「보험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, 의안번호 1911393.

2) 전문적 금융규제와 일반적 독점규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“중복” 규제보다 “이원적” 규제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나 일선 보험회사는 “중복” 규제로 느낄 개연성도 있음.

으며 보험회사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.

- 보험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보험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.

●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여러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부당 공동행위(담합) 혐의로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왔음.

- 2000년 이후 공동행위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8건³⁾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독당국의 가격관련 행정지도가 연관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료 등 결정과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였음.

■ 보험시장에 대한 두 행정기관의 상충되는 규제는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담합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보험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● 최근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⁴⁾에 대해 고등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⁵⁾되었으나, 이미 보험회사 담합혐의 언론보도로 실추된 소비자 신뢰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.

■ 보험시장에 대한 규제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「보험업법」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보험업법 제131조의2⁶⁾를 제131조의3으로 하고 제131조의2 (행정지도)를 신설하였으며 총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●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을 포함)가 보험업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● 제2항은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.

●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.

3) 이승준·강민규·이해량(2014. 3), 『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』,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, pp. 17~18.

4)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11-284호, 2011. 12. 15.

5) 대법원 2014. 7. 24. 2013두16951 및 서울고등법원 2013.7.17 2012누2346.

6)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.

〈표 1〉 「보험업법」 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〈신설〉	제131조의2(행정지도) ①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제131조의2(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) (생략)	제131조의3(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) (현행 제131조의2와 같음)

■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원적 규제의 상충을 입법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- 첫째,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보험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 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적 협의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규제 상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.
 - 개정안에 따라 양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,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가능성은 줄어들.
- 둘째,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적 협의는 양 기관 사이의 업무협약 활성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의 법규리스크를 낮추어 금융시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 - 2007년 12월,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 공정거래규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여 왔음.
 - 최근 양 기관은 금융회사 공정거래규제에 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(MOU)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.

■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하여 보험시장 이원적 규제의 상충이 완화되어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낮아지고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와 협력 강화를 통해 법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. [kiri](#)